

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

1. 적용범위

- 1.1 본 과업지시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함)과 소방시설물 위탁받은 업체(이하 “도급자” 이라 한다) 간에 적용한다.
- 1.2 “도급자” 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라야 한다.

2. 용역의 개요

2.1 개 요

- 1) 용 역 명 : 2025년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
- 2) 용역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3) 용역대상 :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

2.2 점검의 목적

- 1) 소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화재사고 방지
- 2)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에 의한 점검 및 관리로 안전유지 기능강화
- 3) 월별 계획에 의한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시설점검
- 4) 소방시설의 계획, 운영, 교육, 보수 등 시설관리
- 5) 기타 “발주자” 가 요구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 및 소방행정 업무처리

2.3 점검의 내용

- 1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1항에 의한 소방점검 실시
- 2)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
- 3)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무(정기점검(외관점검) 월1회,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연 1회)

3. 용역의 착수

- 3.1 “도급자” 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“발주자” 의 승인을 받아 위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3.2 “도급자” 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.
- 3.3 제출서류 : 착수계, 용역수행계획서, 현장대리인계(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함), 용역참여자 명단

4. 용역의 수행

- 4.1 “도급자”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4.2 “도급자”는 “발주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“도급자”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4.3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“도급자”는 “발주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.
- 4.4 “도급자”는 “발주자”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운영 및 자문이나 기술적 검토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5. 권리의무의 양도금지

“도급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점검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.

6. 대가지급 및 용역 연장관리

- 6.1 “도급자”는 익월 10일 이전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, “발주자”는 용역 대가를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6.2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 계약 일까지 연장 관리 하며 명년도 1월 점검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6.3 “도급자”는 대가 청구 시 “발주자”가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6.4 “도급자”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“발주자”가 당해연도 용역에 대한 계약 및 인력투입전까지 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7. 용역대가의 정산

“도급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삭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발주자”는 이를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, “도급자”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8. 용역변경

- 8.1 용역 수행 중 “발주자”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“도급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8.2 “도급자”는 용역 수행 중 용역의 범위, 기간, 인원, 착오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“발주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9. 계약의 해지

9.1 “도급자”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“발주자”가 본 계약을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2)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)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“발주자”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
- 4) “발주자”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
- 5)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건

10. 용역수행 참여자의 교체

“도급자”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참여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서상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며, 인수, 인계를 철저히 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.

11.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

11.1 “도급자”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.

11.2 “도급자”는 업무수행에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) “발주자”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- 2) 각종 기밀 및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
- 3) 근무태만 또는 “발주자”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4) 작업장내 위험물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

12. 과업지시서의 해석

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“발주자”, “도급자” 쌍방이 협의토록 하고,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때에는 “발주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특기 사항

1. 적용범위

소방시설의 점검유지관리 용역범위는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각 연 1회씩 이상 및 정기점검(외관점검)을 월1회(총10회) 이상 방문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한다.

2. 용역기간

용역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계약기간 종료 후 “발주자”가 예산 미확정 또는 기타사항으로 차기연도 계약이 늦어 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당초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3. 현장대리인 상주

점검 시에는 현장에 소방시설관리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점검한다.

4. 안전관리

본 점검의 시행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각별히 주의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“도급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
5. 원상복구

점검 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시 점검자의 책임으로 점검 후 각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“도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6. 점검사항 변경

점검개요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점검사항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.

7. 점검의 중지

천재지변 및 소음, 진동, 화재 등 관련사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감독자의 지시로 즉시 점검을 중지할 수 있다.

8. 점검방법 및 서식

- 1) 모든 점검서식은 법령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.
- 2) 점검자는 점검 시 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 한다.

9. 점검결과

- 1) 점검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한 후 미비사항이 있을시에는 보완 조치하여 관할소방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한다.
- 2)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비사항 보수 시 점검자의 장비와 인력으로 점검과 병행하여 개선조치 한다.
- 3)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 이외에 제안, 자문, 기술적 검토 등은 별도로 한다.
- 4) “발주자”의 필요에 의한 제반서류(도면포함)등을 “도급자”는 관할소방서에 제출한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긴급을 요하는 소방시설물은 수거조치 및 현장조치 등으로 화재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 한다.

10. 업무지시

본 계약에 의한 감독의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하며 다만,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점검일지에 기록한다.

11. 용역수행 전·후 보고

“도급자”는 월별 또는 일별 용역수행 전·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2. 결과보고

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은 관할소방서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법정 기일 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동등하게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한다.

13. 피해보상

점검원이 점검 시 부상 또는 시설물의 파손 등 재해가 발생시에는 민·형사상에 책임은 “도급자”에게 있으며, 만일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산재보험 영수증 사본 및 영업배상 책임 사본을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.

14. 기타

용역수행자는 모든 점검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